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368호

나. 발 의 자 : 김기덕 의원(찬성자 21명)

다. 발의일자 : 2025년 2월 3일

라. 회부일자 : 2025년 2월 5일

2. 제안이유

- 각종 체육사업 관련 최일선에서 활동하면서도,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열악한 대우를 받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원책이 요구됨.
- 이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마련 및 수준 높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인권 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특히, 최근 건강 및 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체육시설인 스포츠클럽의 사용료 감면을 통해 체육시설 활성화 및 시민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스포츠클럽'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정비함 (안 제2조제1호)
- 나. 생활체육지도자 인권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근거 규정 신설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 다. 체육시설인 스포츠클럽의 사용료 감면에 대해 규정함 (안 제9조의2)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시민 체육활동의 최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인권 보호 및 일·가정 양립 문화가 준수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시민들의 생활체육 모임인 스포츠클럽이 전문체육 시설 혹은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그 사용료를 감면하게 하여 스포츠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생활체육지도자의 현황 및 인권 개선 필요성

- 생활체육지도자는 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지역체육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배치를 시작하였고, 2019년부터 기존 기간제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신분 전환을 시작하였으며, 2024년에는 전국 2,800명이 배치되어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2025년 기준 345명이 각 자치구 체육회에 배치되어 있으며, 국비·시비·구비 비율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

< 서울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현황 >

(단위 : 명)

구 분	일반 지도자	어르신 지도자	유소년 지도자	구 분	일반 지도자	어르신 지도자	유소년 지도자
계(345)	180	158	7	서대문구(15)	7	7	1
종로구(12)	7	5		마포구(16)	8	8	
중 구(11)	7	4		양천구(12)	5	6	2
용산구(11)	6	5		강서구(16)	9	7	
성동구(15)	7	7	1	구로구(13)	7	6	
광진구(15)	7	7	1	금천구(10)	5	5	
동대문구(12)	6	6		영등포구(13)	7	6	
중랑구(13)	8	5		동작구(13)	6	7	
성북구(17)	9	8		관악구(15)	8	7	
강북구(14)	7	6	1	서초구(13)	6	7	
도봉구(13)	6	7		강남구(13)	8	5	
노원구(18)	8	9	1	송파구(15)	9	6	
은평구(17)	10	7		강동구(12)	7	5	

- 2023년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안전한 스포츠환경 조성 방안>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생활체육계에서 금전적 요구 및 지원, 어느 정도 폭력은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음이 확인됨.

< 생활체육지도자 스포츠계 인권 인식 >

평가 항목	그런 편이다	보통	그렇지 않은 편이다
1) 생활체육계에서 금전적 요구 및 지원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함	71.4	28.6	-
2) 생활체육계에서 어느 정도의 폭력은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71.4	25.0	3.6
3) 최근 생활체육계에서 인권 관련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함	7.2	57.1	35.7
4) 최근 생활체육계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함	3.6	53.5	42.9
5) 최근 생활체육계에서 인권 문제를 공정하게 대처 및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함	3.6	67.8	28.6
6) 생활체육계에서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에 공식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편리함	28.6	53.5	17.9
7) 생활체육계에 인권침해 행위를 신고하면 공정하게 처리하는 제도와 기구가 있음	25.0	57.1	17.9

-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인권 침해 예방 및 개선을 위해 지도자의 처우개선(35.7%), 인권 침해 징계수준·처벌 강화(14.3%), 인권침해 관련 매뉴얼·규정 등 마련(10.7%) 등을 우선 필요한 사항으로 응답하였음.
- 이에 생활체육지도자를 위한 안전한 스포츠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라도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와 관련 법령 준수가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고 판단되므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동 개정조례안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다. 스포츠클럽 활성화의 필요성

- 스포츠클럽은 지역사회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 지역 스포츠 문화 발전 및 참여 확대 등 주민의 신체활동 증진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생활스포츠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음.

< 서울시 스포츠클럽 현황 >

○ 11개 자치구 48개(지정 6, 등록 42) ※'25.2월 기준

- 지정¹⁾ 스포츠클럽: 강서(1), 광진(1), 구로(1), 마포(1), 영등포(1), 중랑(1)
- 등록²⁾ 스포츠클럽: 강남(10), 강서(4), 광진(4), 구로(1), 노원(5), 성동(12), 송파(5), 은평(1)

- 서울시 스포츠클럽 현황으로 25년 2월 기준으로 11개 자치구에 48개(지정 6개, 등록 42개)의 스포츠클럽에서 4,212명의 시민이 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됨.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체육활동 실태와 수요를 파악하여 국민의 생활체육 접근성 확대와 참여율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국민 생활체육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결과인 〈2024 국민생활체육조사〉를 살펴보면, 그동안 증가해 오던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하락 반전하였고, 스포츠클럽이 포함된 체육 동호회 가입·활동 추이도 동반 하락한 것으로 볼 때 시민의 생활체육 활동 증진을 위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클럽의 활성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생활체육 참여율 및 체육동호회 가입·활동률 >

(단위 :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생활체육참여율	60.1	60.8	61.2	62.4	60.7
체육동호회 가입·활동률	-	-	10.2	11.3	9.5

라.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 및 노동권 보호(안 제7조의2)

- 동 개정안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 1) 등록 스포츠클럽은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단체로서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받은 단체를 말함.
- 2) 등록 스포츠클럽 중에서 「스포츠클럽법」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함.

예방 및 피해 지원, 피해자 지원, 노동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의 사업을 시장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신설>	제7조의2(생활체육지도자 인권 및 노동권 보호)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 지원 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지원 3.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노동관계 법령상의 의무 준수 여부

○ 국민의 인권과 노동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32조에 명시된 기본권으로, 이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들은 국민의 기본권리보장을 위해 서라도 추진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가 제정된 바 있으며,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노동관계법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된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따라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므로 개별 조례에 이를 추가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법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임.

(2) 생활체육지도자 일·가정 양립 지원(안 제7조의3)

○ 개정안은 생활체육지도자가 임신, 출산, 육아 환경에 있어 다른 노동자

와 다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해 시장이 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신설>	제7조의3(생활체육지도자 일·가정 양립 지원) ① 시장은 체육회가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임신, 출산, 육아 환경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회가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하지 않도록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

- 생활체육지도자는 배치를 희망하는 해당 자치구체육회에서 채용과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관련은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 주체인 자치구체육회의 소관사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임.
- 또한 지방체육회에 대한 자치단체의 권한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와 제43조에서 볼 수 있듯이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다고 볼 수 있으며, 시·도의 조례가 관할 시·군·구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제처의 의견제시 사례³⁾ 등을 참고할 때 동 개정안에서 부여한 시장의 지도권에 대해서는 선언적인 의미로만 한정될 수 있다고 판단됨.

(3) 스포츠클럽의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안 제9조2)

-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3) 법제처 2019. 1. 17. 의견제시 18-0293 참조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이 사용함에 있어 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스포츠클럽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명시된 위임 사항을 조례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감면 조항에 대해서는 법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⁴⁾ 후단에 사용료 감면의 조건이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는 실제 감면에 앞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스포츠클럽 등이 시행령의 조건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무분별한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전문위원	임창균(2180-8113)	입법조사관	정재운(2180-8117)
------	----------------	-------	----------------

4)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의안번호
2368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김기덕 의원	2025.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제안이유〉 ○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강화를 위해 인권 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의 근거 마련 ○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통한 체육시설 활성화 및 시민건강 증진 〈주요 입법 요지〉 ○ ‘스포츠클럽’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정비(안 제2조제1호) ○ 생활체육지도자 인권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근거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추진경과 ○ 2025. 2. 3. 조례안 발의(발의자 : 김기덕 의원) - (찬성자) 강석주, 김정, 김규남, 김성준, 김영철 의원 등 21명				
부 서 검 토 의 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스포츠클럽법」 제2조(정의)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뜻을 명확히 하고, ○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상위법인 「스포츠클럽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지자체가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일부조례개정안에 동의함				
대응방안	○ 해당없음				
상 임 위 처 리 결 과	○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				
향 후 계 획	○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팀장	함혜정(☎2133-2732)	담당	이미르(☎2133-2744)